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37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주진우

김상훈 • 조지연 • 김도읍

김종양 • 이종욱 • 유영하

김선교 • 서일준 • 박대출

김기현 · 김민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조(「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은행법」의 개정)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9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 ④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u>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u>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 ④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u>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 ④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 <u>정</u>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했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혅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 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 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 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 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개 정 아

-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 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 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에 관하여는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 <삭 제> 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 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 야 한다.

<u>⑥</u>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 <삭 제> 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 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 하여 준용한다.